

제주지방법원 2022. 5. 17 선고 2021가단15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

담당변호사 양동혁, 임선영, 홍승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현주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균

변 론 종 결 2022. 3. 22.

판 결 선 고 2022. 5. 17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4. 24. 체결된 증여계약은 56,486,9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56,486,9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가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'C은 원고에게 13,326,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10. 25.부터 2007. 8. 13.까지는 연 17%의, 그 다음 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7. 4. 28. 발령되어 2017. 6. 17. 확정되었고(제주지방법원 2017차전1441), 2021. 2. 26.을 기준으로 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원리금 합계액은 56,486,937원이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고 한다)에 관하여 C이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10. 12. 23. 접수 제804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같은 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80457호로 채권최고액을 9,100만 원, 채무자를 D, 근저당권자를 E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'라고 한다), 같은 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80458호로 C의 처형인 F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2010. 12. 23.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(이하 '이 사건 가등기'라고 한다)가 각 마쳐졌다.

다. F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11. 5. 13. 접수 제35875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가 2018. 4. 23.자 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와 2018. 5. 15. 접수 제48698호로 이를 말소하였고, 2018. 5. 14.자 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와 2018. 5. 15. 접수 제48699호로 이 사건 가등기도 말소하였다.

다. C은 2018. 4. 24.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'라고 한다)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18. 5. 15. 접수 제48701호로 피고 앞으로

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같은 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48697호로 이 사건

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.

라.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소 2020. 2. 7. 접수 제12619호로

채권최고액을 7,200만 원, 채무자를 C,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'라고 한다)가 마쳐졌다.

마.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

가. 피보전채권

원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(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), C과 피고의 관계, 이 사건 증여 당시 C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3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.

3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

가.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

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

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, 이 사건 증여 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롭게 경료 되어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나.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

갑 제3,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가액은 3억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9,1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위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2억 원을 상회한다고 볼 것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56,486,937원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6,486,9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희진

[별지]

목 록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파트 동[도로명주소]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 호 :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 : 1층 호 84.9873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.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 46385.7㎡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46385.7분의 50.7799

